

대통령령 제 호
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6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

제22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의2(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) ① ~ ⑤ (생략) ⑥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어야 한다. 1. ~ 6. (생략) <u><신설></u> ⑦ ~ ⑨ (생략)	제8조의2(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7.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</u> ⑦ ~ ⑨ (현행과 같음)
제22조(변경등록 신청) ① ~ ③ (생략) ④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”이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. 1. ~ 6. (생략) <u><신설></u> ⑤·⑥ (생략)	제22조(변경등록 신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7.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</u> ⑤·⑥ (현행과 같음)